### 사 업 명

# (9) 청년일자리창출지원(1043-301)

## 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ં મો. ૪ો ગો	- 01 도범	카네 - 이지 레리		080	08D
명칭	일반회계	고용노동부	청년고용정책관		사회복지	고용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43	301
명칭	고용창출및훈련	중소기업청년인턴제	청년일자리창출지원

# 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0						

### 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	2023년 예산	2024년		증감	
71 H 3	결산	본예산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년일자리창출지원	233,321	889,078	649,034	657,680	△231,398	△26.0

# 4. 사업목적

- 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,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
- (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)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

#### 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: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,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, 제7조
- ② 추진경위
  - 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,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(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디지털일자리 등)이 '21년 일괄 종료
  - ⇒ 청년실업 악화·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,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('22~'24년)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
  - (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)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('24년 한시사업)

#### 6. 주요내용

- ① 사업규모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 '22년~'24년(3년 한시사업) (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) '24년(시범사업)
-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(예산액기준,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
사업비	796,338	1,121,166	542,769	889,078	657,680

#### 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민간위탁
- 사업시행주체 : 고용노동부(고용센터), 민간운영기관
- 사업 수혜자 : 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
(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)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: 해당없음

# 7. 사업 집행절차

# <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>

-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·승인, 요건심사 등 수행,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

추진절차	시행주체	절차내용
① 사업 참여신청	참여기업	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
∜ ② 기업 참여 승인 □	운영기관	사업 참여 요건 검토 후 참여 승인
③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신청	참여기업	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
↓ ④ 지원금 지급 요청	운영기관	지원 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
⑤ 지원금 지급	고용센터	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

# <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>

- 민간운영기관은 지원금 접수·요건심사 등 수행,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

추진절차	시행주체	절차내용
① 지원금 신청	참여청년	지원금 신청(참여청년 → 운영기관)
↓ ② 지원금 지급 요청 ↑	운영기관	지원 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
③ 지원금 지급	고용센터	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